

대한사격연맹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2020년도 심판 등록 일자 및 절차 안내

대한체육회 경기인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인대회부터 등록된 심판(주리, 레프리)만 심판 활동 가능하며, 심판 등록 관련 일자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시·도 소속 심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심판등록 일정: 2020년 상시가능
2. 2020년 심판 등록대상자
 - 1) 대한사격연맹 공인대회(전문체육, 생활체육대회) 활동 심판(주리, 레프리)
 - ※ 대회참가선수는 주리 활동 불가하며 **레프리는 대회 참가선수 가능(대한체육회 승인)**
 - ※ 사선통제관, 장비복장검사관 외 중 주리를 겸하지 않는 경기임원은 심판등록 불필요
 - 2) 사격 국내 및 국제심판자격증 보유 경력자(유효기간 만료자 포함)로 자격 부여
 - ※ 선수 등록자도 심판 등록 가능(※ 대한체육회에서 사격 종목만 예외로 승인)
3. 등록 시 제출서류: 없음(시스템 등록 시 출력 가능한 심판 등록 신청서 제출 불필요)
4. 등록절차
 - 1) 인터넷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록시스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심판등록 신청서 작성
 - 2) 온라인 스포츠인권 교육 및 도핑방지교육 수료완료(동영상 시청)
 - ※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교육 수료자는 별도 시청 없음
 - 3) 자격사항 입력 시 심판자격증 만기자는 아래와 같이 입력

- 자격명: 심판자격증 보유 경력자
 - 자격등급: 기타
 - 자격등급상세: 등급없음
- 4) 승인절차: 1차 신청서 작성 → 2차 대한사격연맹 최종승인 (심판등록 완료)

5. 등록 결격사유(경기인 규정)

제32조(등록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·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8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(다만,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력·성폭력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·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)

- 붙임: 1. 심판등록시스템 안내 1부.
2. 경기인등록 규정(심판등록 관련 조항) 1부. 끝.

(사)대한사격연맹회장



수신 시도연맹회장, 가맹연맹회장

★과장 이민규 사무처장 이용재 부회장 전결 07/14 황의청

협조자

시행 대한사격연맹-1511 (2020.07.14.) 접수 ()

우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53(공릉동) / www.shooting.or.kr

전화 /전송 / shooting@sports.or.kr / 공개